약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MetLife

함께 찾아가는 인생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 중 회사가 정한 상품(다만, 특약의 중도부가가 불가한 상품에 한하며, 갱신형상품, 무/저해약환급금형 상품, 외화 및 변액보험은 제외)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①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계약
② 일시납이 아닌 보험계약
③ 보험료 연체 시 **월공제액**으로 연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기능이 없는 보험계약

월공제액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3 조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자가 제2조(특약의 적용범위)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내,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진단**의 경우 최초진단 이후 1년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단축근로)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진단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3대 중대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악성 신생물	C00 ~ C97
뇌출혈 및 뇌경색증	I60 ~ I63
급성심근경색	I21 ~ I23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계약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1.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서(회사 양식)
2. 각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나. 3대 중대질병(암 등,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진단: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
   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출생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 제2호 가목의 수급자격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보험 수급자격증을 말합니다. 또한, 제2항 제2호 나목의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 포함)
2.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전기납인 경우
3. 주계약의 잔여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다만,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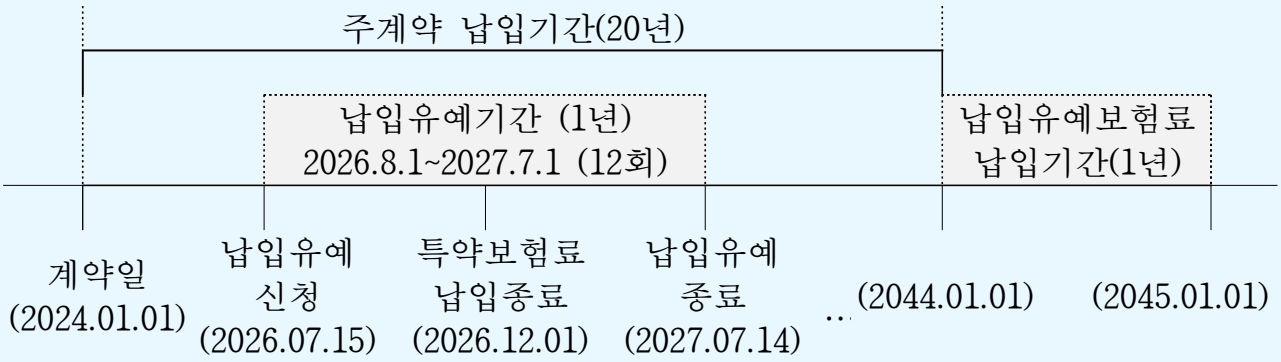
제 4 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② 납입유예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만큼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합니다)는 주계약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계약 납입기간은 납입유예 신청 전의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예시

주계약(20년납), 특약(3년납), 납입기일 매월1일 기준



구분	납입보험료	납입유예기간 (1년)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1년)	납입유예 보험료
주계약	20만원	2026.7.15 ~2027.7.14 ('26.8.1부터 12회)	2044.1.1. ~2044.12.31 (매월 납입기일에 12회 납입)	20만원 x 12회
특약	4만원			4만원 x 5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계약자, 납입기간, 주민번호 정정 등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계약의 변경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납입유예기간 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까지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취소 신청일에 일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 전 계약상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시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주계약 및 특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지급금에서 해당 시점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차감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주계약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납입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납입유예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동안 납입유예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납입유예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및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조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 해약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납입유예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5조('납입유예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제 7 조 기타 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